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38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382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48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210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구량

판결 선고 2022. 7. 28.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4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해당 여부(상고이유 1, 2)

원심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G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3)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선의와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가액배상의 범위(상고이유 4)

원심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는 원고와 피고들의 총 채권액 중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